

1. 개정이유

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에 대한 문언 보완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20248호, 2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됨에 따라 외부 포장에 대한 상세 기재·표시 기준을 정하고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지정 해제·변경 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영업 등록 등의 민원사무에 전자적 방식의 증명서를 도입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개선하며 최근 화장품을 표방하며 인체 내 주사 등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용법의 표시·광고에 대한 소비자 안전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관련 영업자의 준수사항과 그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한 화장품 사용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장품제조업 등 민원사무에 전자문서로 된 등록필증 등 포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8조의2, 제8조의3, 제9조, 제15조 및 제17조의3,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6호의4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및 별지 제11호 서식)

화장품제조업 등 영업의 등록(신고) 필증 발급 및 기능성화장품의 심사결과통지서 발급 등의 민원사무에 전자문서 활용 근거를 마련함

나.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지정 해제(변경) 심사 신청 절차 마련(안 제17조의3 별지 제13호의2, 제13호의3 서식 및 별표 9)

화장품 제조업자 등이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서식 및 수수료 규정을 정비함

다. 화장품 외부 포장의 기재·표시에 관한 상세 기준 등 마련(안 제19조 및 별표 4)

- 1) 소비자가 외부에서 기재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외부 포장에 기재·표시한 것으로 같음함
- 2)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기재 시 염모제(탈염·탈색 포함)와 제모제의 경우는 공통 사항만을 외부 포장에 기재하고 이 외의 사항은 첨부문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3) 두 개 이상의 화장품의 세트 포장에는 개별 제품의 제조번호 확인을 위한 관리 번호를 기재하거나, 제조번호의 기재·표시 위치를 안내하는 문구만 기재할 수 있도록 함
- 4) 두 개 이상의 화장품의 세트 포장에는 일부 제품의 사용기한만 기재하거나, 개봉 후 사용기간의 기재·표시 위치를 안내하는 문구만 기재할 수 있도록 함

라.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준수사항 및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강화(안 별표 5 및 별표 7)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그러한 사용을 암시하는 표시·광고의 금지를 준수사항에 반영하고 관련 행정처분 기준으로 업 취소 등을 신설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을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전자문서로 된 등록필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을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전자문서로 된 등록필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등록필증과”를 “등록필증(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각각 제외한다)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등록필증의”를 “등록필증(전자문서로 된 등록필증을 각각 포함한다)의”로 한다.

제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을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전자문서로 된 신고필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조의3제2항 전단 중 “신고필증”을 “신고필증(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신고필증”을 “신고필증(전자문서로 된 신고필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기능성화장품심사결과통지서”를 “기능성화장품심사결과통지서(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결과통지서”를 “결과통지서(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첨부하여”를 “첨부(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하여”로 한다.

제17조의3의 제목 “(원료의 사용기준 지정 및 변경 신청 등)”을 “(원료의 사용금지 해제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2항”을 “법 제8조제1항”으로, “지정·고시되지 않은”을 “지정·고시된 원료를 해제 또는 변경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되지 아니한”으로, “사용기준 지정(변경지정)”을 “사용금지 해제 또는 변경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기준 지정(변경지정) 심사 결과통지서”를 “사용금지 해제 또는 변경 등 심사 결과통지서(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용기준 지정신청 및 변경지정신청”을 “사용금지 해제·변경 등 신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포장 또는 2차”를 “포장만으로 구성되는化粧품의 외부 포장과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化粧품의 외부”로 한다.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化粧품의 기재사항은化粧품의 외부 포장에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 포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투명한 경우 등 소비자가化粧품의 포장을 개봉하지 않아도 외부에서 기재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부 포장에 기재·표시한 것으로 본

다.

별표 4 제목 중 “제19조제7항”을 “제19조제8항”으로 한다.

별표 4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호 다목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조번호

가. 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과 쉽게 구별되도록 기재·표시해야 하며,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병행 표기해야 하는 제조연월일(맞춤형화장품의 경우에는 혼합·소분일)도 각각 구별이 가능하도록 기재·표시해야 한다.

나. 두 개 이상의 화장품을 하나의 세트로 포장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해당 세트 포장의 외부 포장에는 법 제5조의2에 따른 회수 조치 시 회수 대상을 고려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기재·표시할 수 있다.

1) 세트를 구성하는 모든 화장품의 제조번호를 기재·표시 : 회수 대상 제조번호가 기재·표시된 세트만 회수

2) 세트를 구성하는 모든 화장품의 제조번호를 대신하여 세트의 관리 번호를 기재·표시 : 회수 대상 제조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 번호가 기재·표시된 세트만 회수

(관리 번호 설정: 세트의 포장일, 사용기한 등 고려)

3) 제조번호 또는 관리 번호의 기재·표시를 생략하고 아래의 예시와 같이 제조번호의 기재·표시 위치를 안내하는 문구를 기

재·표시 : 회수 대상 제조번호와 관계 없이 회수 대상과 제품
명이 같은 제품을 포함한 세트를 전부 회수

(예시: “제조번호 : 제품에 별도 표시”)

6.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다. 두 개 이상의 화장품을 하나의 세트로 포장하여 판매하려는 경
우 해당 세트 포장의 외부 포장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표시할
수 있다.

1) 사용기한 : 세트를 구성하는 화장품의 사용기한 중 사용기한이
가장 빨리 도래하는 화장품의 사용기한만 기재·표시하고 이외
의 화장품의 사용기한은 아래의 예시와 같이 기재·표시의 위
치를 안내하는 문구를 기재

(예시: “사용기한 : 제품에 별도 표시”)

2) 개봉 후 사용기간 : 세트를 구성하는 화장품의 개봉 후 사용기
간은 아래의 예시와 같이 기재·표시의 위치를 안내하는 문구
를 기재

(예시: “개봉 후 사용기간 : 제품에 별도 표시”)

8.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제2조제6호·제7호에 해당하는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는 별표 3 제
1호에 따른 공통사항을 외부 포장에 기재하고 이 외의 사항은 첨부
문서에 기재할 수 있다.

별표 5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1) 법 제2조제1호에 따른化粧품의 범위를 벗어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표시·광고

2)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효과 등에 대한 표시·광고

별표 7 제2호거목의 위반 내용란 중 “제19조제6항”을 “제19조제8항”으로 하고, 제2호더목1)과 2)를 각각 더목2)와 3)으로 하며, 현행 더목1) 중 “별표 5 제2호가목·나목”을 “별표 5 제2호가목2)·나목”으로 하고, 더목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법 제13조를 위반하여化粧품을 표시·광고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10호				
1) 별표 5 제2호가목1)에 따른化粧품의 표시·광고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품목 판매와 광고업무 정지 3개월	전(全) 품목 판매와 광고업무 정지 4개월	전(全) 품목 판매와 광고업무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별표 9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사용금지·사용제한 원료의 기준 등 심사 의뢰		
가. 신규 심사의 경우	500,000원	510,000원
나. 변경 심사의 경우	200,000원	210,000원

별지 제5호서식의 제출서류란에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을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으로 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제출서류란에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을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로 한다.

별지 제6호의4서식의 첨부서류란에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을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로 하며, 별지 제8호서식의 첨부서류란에 “먼저 발급받은 기능성화장품심사결과통지서”를 “먼저 발급받은 기능성화장품심사결과통지서(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제출서류란에 “(폐업 또는 휴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를 “(폐업 또는 휴업의 경우만 해당하며,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13호의2서식 제목을 ‘원료 사용금지 해제 또는 변경 등 신청서’로 하며 별지 제13호의3서식 제목을 ‘원료 사용금지 해제 또는 변경 등 심사 결과통지서’로 하고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8조의2, 제8조의3, 제9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별표 5 및 별표 7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화장품의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품목부터 적용한다.

제3조(화장품의 기재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재·표시되어 있는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은 제19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제4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원료 ☐ 사용금지 해제 또는 변경 ☐ 사용기준 지정 또는 변경 신청서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80일
------	------	--------------

신청인	상호(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등록번호(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 판매업자만 해당) 또는 법인번호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 내용	
분류	☐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해제 또는 변경 ☐ 사용상의 제한이 있는 원료의 사용기준 지정 또는 변경 ※ 사용 제한 원료에 해당하는 경우(☐ 색소 ☐ 보존제 ☐ 자외선차단제 ☐ 기타)
성분명	
신청내용	현재(변경 전) 및 신청내용(변경 후)이 포함되도록 기재
비고	

「화장품법」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금지 원료의 해제(변경) 또는 사용제한 원료의 사용기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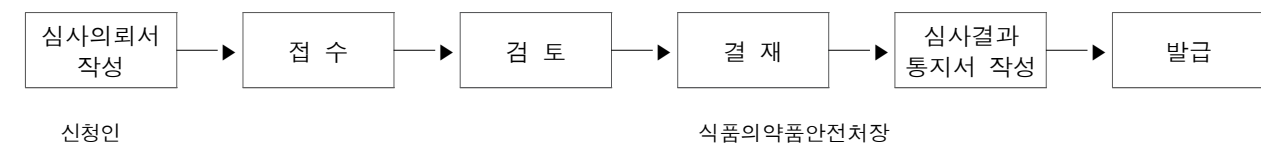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첨부서류	1. 제출자료 전체의 요약본 2. 원료의 기원, 개발경위, 국내·외 사용기준 및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 3. 원료의 특성에 관한 자료 4.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자료(유효성에 관한 자료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원료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및 시험성적서	수수료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 정한 금액
------	--	------------------------------------

처리 절차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제 호			
원료		☐ 사용금지 해제 또는 변경 ☐ 사용기준 지정 또는 변경	
		심사 결과통지서	
상호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등록번호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만 해당) 또는 법인번호	
소재지			
성명			
심사항목			
분류	☐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해제 또는 변경 ☐ 사용상의 제한이 있는 원료의 사용기준 지정 또는 변경 ※ 사용 제한 원료에 해당하는 경우([] 색소 [] 보존제 [] 자외선차단제 [] 기타)		
성분명			
적합여부			
보완자료 (필요시)			
비 고			
「화장품법」 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금지 원료의 해제(변경) 또는 사용제한 원료의 사용기준 지정(변경) 심사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직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제조업의 등록 등) ① 삭제 ②·③ (생략) ④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화장품제조업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별지 제2호서식의 <u>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u> 을 발급해야 한다. 1. ~ 5. (생략)	제3조(제조업의 등록 등)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u>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전자문서로 된 등록필증을 포함한다)</u> -----. 1. ~ 5. (현행과 같음)
제4조(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등) ① 삭제 ②·③ (생략) ④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별지 제4호서식의 <u>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u> 을 발급해야 한다. 1. ~ 6. (생략)	제4조(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등)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u>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전자문서로 된 등록필증을 포함한다)</u> -----. 1. ~ 6. (현행과 같음)

록) ① (생략)

②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의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화장품제조업 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을 달리하는 화장품제조소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에는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록) ① (현행과 같음)

[illegible]

제8조의3(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변경신고) ① (생략)

제8조의3(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의
변경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제 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6호의4서식의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과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재지를 변경하는 때에는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생략)

④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그 요건을 갖춘 때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대장과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의 뒷면에 각각의 변경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은 신고인에게 다시 내주어야 한다.

제9조(기능성화장품의 심사) ①

② -----

----- 신고필증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신고필증(전자문서로 된 신고필증을 포함한다)-----

-----.

제9조(기능성화장품의 심사) ①

(생 략)

② 삭 제

③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능성화장품 변경심사 의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먼저 발급받은 기능성화장품 심사결과통지서

2. (생 략)

④ (생 략)

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제4항에 따라 심사를 한 후 심사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별지 제9호서식의 기능성화장품 심사·변경심사 결과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1. ~ 4. (생 략)

⑥ (생 략)

제15조(폐업 등의 신고) ① 법 제6조에 따라 영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 후 그 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현행과 같음)

③ -----

-----.

1. ----- 기능성화장품 심사결과통지서(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

----- 결과통지서(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를 포함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15조(폐업 등의 신고) ① -----

서식의 폐업, 휴업 또는 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폐업 또는 휴업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17조의3(원료의 사용기준 지정 및 변경 신청 등) ①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연구기관등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되지 않은 원료의 사용기준을 지정·고시하거나 지정·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을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원료 사용기준 지정(변경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5. (생략)

----- 첨부(전자문서로 발급받
은 경우에는 제외한다)하여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의3(원료의 사용금지 해제
신청 등) ① -----

----- 법 제8조제1항-----
지정·고시된 원료를 해제 또는
변경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되지 아니한 -

--- 사용금지 해제 또는 변경
등 -----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청인이 제1항의 자료를 제출한 날(제2항에 따라 자료가 보완 요청된 경우 신청인이 보완된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의 3서식의 원료 사용기준 지정(변경지정) 심사 결과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료의 사용기준 지정신청 및 변경지정신청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제19조(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 등) <신 설>

② (현행과 같음)

③ -----

----- 사용금지 해제 또는 변경 등 심사 결과통지서(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를 포함한다)-----.

④ -----
----- 사용금지 해제·변경 등 신청-----
-----.

제19조(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화장품의 기재사항은 화장품의 외부 포장에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 포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투명한 경우 등 소비자가 화장품의 포장을 개봉하지 않아도 외부에서 기재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부 포장에 기재·표시한 것으로 본

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1차 포 장 또는 2차 포장에는化粧품의 명칭, 化粧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맞춤형化粧품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 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 조연월일을 병행 표기하여야 한 다)만을 기재·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포장의 경우 가 격이란 견본품이나 비매품 등의 표시를 말한다. 1. 2. (생략) ② ~ ⑦ (생략)	다. ② ----- 포 ----- 장만으로 구성되는 化粧품의 외 부 포장과 1차 포장에 2차 포장 을 추가한 化粧품의 외부 ---- ----- ----- ----- ----- ----- ----- ----- -----. 1. 2. (현행과 같음) ③ ~ ⑧ (현행 제2항 및 제7항 과 같음)
---	---